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청소년복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 이연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00306호)

2024. 9.

여 성 가 족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청소년복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연희의원 등 18인
2. 제 안 일 : 2024. 6. 11.
3. 회 부 일 : 2024. 6.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소년수련시설 등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복지에 제공되는 청소년복지시설은 그 운영자가 해당 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상존하고 있음.

이에 청소년복지시설의 운영자로 하여금 그 시설에 대하여 정기 안전점검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안전기준을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해 청소년복지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각종 안전사고 발생 위험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및 제45조제1항제3호 신설).

Ⅲ. 검토의견

1. 청소년복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개정안은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해당 시설의 정기 안전점검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및 제45조제1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33조의2(청소년복지시설의 안전점검 등) ①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자”라 한다)는 시설에 대하여 정기 안전점검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정기 안전점검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결과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자에게 시설의 보완 또는 개수(改修)·보수(補修)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제3항에 따른 시설의 보완 및 개수·

현행	개정안
제4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보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2. (생략)	⑤ 제1항에 따른 정기 안전점검 및 수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시설의 범위·시기, 안전점검기관, 안전점검 절차 및 안전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제45조(과태료) ① ----- ----- -----.
② ~ ④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제33조의2의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
	② ~ ④ (현행과 같음)

현행법 제31조¹⁾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은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이 있으며, 가정 밖 청소년이나 학습·정서·행동상의 장애를 가진 청소년 등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임.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 「청소년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이하 “청소년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쉼터: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하여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
2. 청소년자립지원관: 일정 기간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시설
3. 청소년치료재활센터: 학습·정서·행동상의 장애를 가진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상적인 성장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청소년에게 적합한 치료·교육 및 재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거주형 시설
4.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소년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호 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에 대하여 보호자를 대신하여 그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가 상담·주거·학업·자립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청소년복지시설은 일정 수 이상의 청소년이 지속적으로 거주하며 생활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시설 전반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자로 하여금 그 시설에 대하여 정기 안전점검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시설의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복지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각종 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청소년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2)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고, 동법 제34조의43)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으로 하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또, 「청소년복지 지원법」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3)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시설의 안전점검 등) ① 시설의 장은 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 안전점검을 한 후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결과를 받은 후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운영자에게 시설의 보완 또는 개수(改修)·보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의 운영자는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시설의 보완 및 개수·보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기 또는 수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시설의 범위, 안전점검 시기, 안전점검기관 및 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8조의4(시설의 안전점검 등) ①법 제34조의4에 따른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사회복지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여금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의 운영자에게 시설의 보완 또는 개수·보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점검, 시설의 보완 및 개수·보수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동법 제58조제2항4)은 안전점검 실시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에 따라 청소년복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됨.

따라서 개정안의 목적은 이미 「사회복지사업법」에 반영되어 있다는 점과 안전점검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사회복지사업법」과 다르게 규정할 경우 다른 사회복지시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봄.

참고로,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5)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1.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이하 이 조에서 “시설”이라 한다)의 장은 매 반기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시설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결과 해당 시설의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점검기관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수시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는 건설사업자

4) 「사회복지사업법」

제58조(과태료) ② 제13조제2항 단서 및 제3항, 제11조의4, 제18조제6항, 제24조, 제31조, 제34조의3, 제34조의4, 제37조, 제38조제1항·제2항 또는 제45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은 사회복지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동법 제18조6)에서 청소년수련 시설의 운영대표자로 하여금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하여 정기 안전점검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에 대하여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복지시설은 사회복지시설로서 이미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시설의 안전점검 등)에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의 실익이 없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645

1. 청소년수련시설

- 가. 청소년수련관: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 수련시설
- 나. 청소년수련원: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 다. 청소년문화의 집: 간단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 중심의 수련시설
- 라.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의 직업체험, 문화예술, 과학정보, 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
- 마. 청소년야영장: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청소년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
- 바. 유스호스텔: 청소년의 숙박 및 체류에 적합한 시설·설비와 부대·편익시설을 갖추고, 음식편의 제공,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청소년수련활동 지원은 제11조에 따라 허가된 시설·설비의 범위에 한정한다)을 기능으로 하는 시설

6)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8조(수련시설의 안전점검 등) ①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시설에 대하여 정기 안전점검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제1항에 따라 정기 안전점검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결과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에게 시설의 보완 또는 개수(改修)·보수(補修)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이나 시설의 보완 및 개수·보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기 안전점검 및 수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시설의 범위·시기, 안전점검기관, 안전점검 절차 및 안전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참고자료]

< 「사회복지사업법」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 규정 비교 >

「사회복지사업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
제34조의4(시설의 안전점검 등) ① 시설의 장은 시설에 대하여 <u>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u> ② 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 안전점검을 한 후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결과를 받은 후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운영자에게 시설의 보완 또는 개수(改修)·보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의 운영자는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시설의 보완 및 개수·보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기 또는 수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시설의 범위, 안전점검 시기, 안전점검기관 및 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2(청소년복지시설의 안전점검 등) ①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자”라 한다)는 시설에 대하여 정기 안전점검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정기 안전점검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결과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자에게 시설의 보완 또는 개수(改修)·보수(補修)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제3항에 따른 시설의 보완 및 개수·보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정기 안전점검 및 수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시설의 범위·시기, 안전점검기관, 안전점검 절차 및 안전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과태료) ② 제13조제2항 단서 및 제3항, 제11조의4, 제18조제6항, 제24조, 제31조, 제34조의3, 제34조의4, 제37조, 제38조제1항·제2항 또는 제45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u>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u>	제4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u>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u> 3. 제32조의2의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